

《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》

1. 계약목적:

-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-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②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:

- ① 대상자(보호자)와 센터가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② 등급 변동, 이용수가 변경, 계약기간 종료 시,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
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가.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당해연도 등급별 총수가금액× 본인부담률)을 대상자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구 분		비율(%)	내 용
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 100%~85%	*대상자 등급과 경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 *100~85%를 공단에서 지급
	본인부담금	총액의 0%~15%	*일반 수급자는 15% 본인부담 *경감대상자는 6~9% 개인부담 *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(0%)

나.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- (1) 방문 당 본인부담금의 비용산정은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.
- (2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(3)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 변경 시, 공단의 월 한도액을 확인 후 적용

한다.

- (4) 대상자의 영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: 신원인수인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.

- (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- (2)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(3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종사자로부터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: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(1)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(2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해야한다.
- (3)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- (4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5. 계약의 해제

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와 센터는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(1)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(2)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(3)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(4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(5)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(6)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(7)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- (8) 본인부담금 미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(9)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 경우
- (10)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·폭행을 한 경우

6. 센터의 의무

- 가.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.
- 나.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,
- 다.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(보호자)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7. 대상자의 의무

대상자(보호자)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가.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조사시 센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명확하고 빠짐없는 정보를 제공한다.
- 나.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.
- 다.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(수급자(보호자)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에서 이용승인을 대행할 수 있다)
- 라.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